

이혼 가족 아동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박경자(Kyung Ja Park)¹⁾

최혜영(Hye Yeong Choi)²⁾

한준아(Jun Ah Han)³⁾

ABSTRAC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divorced families during the past 10 years in Korea. Divorce imposes a great impact on their children as well as divorcees. As many as 1.41 million children under 20 years-old have experienced their parents' divorce in past 10 years. Children are faced with much difficulty in adjustment after the parental divorce. Issues of the research and policy on the divorced family are discussed in this study. For future studies, a longitudinal research model, father-custody and grandparent-custody families, custody parents's gender, a theoretical model for Korean divorced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New legislations have been recently enacted to enhance children's well-being, but further efforts such as the involvement of child development specialists in the divorce process should be followed in the pursui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Key Words : 이혼(divorce), 이혼 가정 아동(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이혼 현황(facts on divorce), 이혼 연구(research on divorce), 이혼 정책(divorce policy).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가족법 개정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부부간의 경제적 의존도의 약화, 남녀의 성역할 변화 등의 이유로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

율은 2003년 조이혼율이 3.4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혼 정책의 변화로 최근 5년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³⁾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yung Ja Park,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kjpark@yonsei.ac.kr

는 중대한 사건이다. 최근 10년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141만 명을 넘어(통계청, 2009), 이혼 가정의 아동에 대한 학계 및 사회적, 국가적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I. 현 황

이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이혼 건수는 116,500건으로 하루 평균 321쌍의 부부가 이혼하였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최근 30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 이혼 건수는 약 23,100건으로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이 0.6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약 68,300 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1.5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약 116,300 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2.5까지 증가하였다. 2003년에 166,617 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3.4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4년에는 2.9, 2005년에는 2.6, 2006년과 2007년은 2.5, 2008년은 2.4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 참고). 이러한 조이혼율의 감소는 15~49세의 유배우자 인구의 감소와, IMF 외환위기의 극복 등과 같은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영향과 함께 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인한 이혼 신고의 일시적인 공백과 이혼 신청 취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말에 민법 개정으로 합의 이혼을 하려면 양육할 자

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08년 6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이혼숙려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전국 법원의 80%에서 2~4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04년 10%에 불과했던 합의 이혼 신청 취하율이 2007년에는 21.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2008).

최근에는 내국인 부부간의 이혼보다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이혼 건수 중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1,255건으로 전년의 8,671건보다 2,584건(29.8%) 증가하였다(표 2 참조). 2002년에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총 이혼의 1.2%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총 이혼의 9.7%를 차지하였다. 이 중 한국인 부인-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3,293건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의 이혼은 7,962건으로 전년보다 39.5%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결혼 적응 문제와 이혼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반영해준다.

부부가 이혼하기 까지 동거한 기간을 살펴보면 결혼 초기의 이혼은 점차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증가하였다.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한 부부는 198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 중 42.4%에 달하였으나 1997년 31.0%로 감소하였고, 1998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표 1> 최근 30년간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 | 1980 | 1985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 이혼건수 | 23.1 | 38.8 | 42.8 | 68.3 | 79.8 | 91.2 | 116.3 | 117.4 | 119.5 | 134.6 | 144.9 | 166.6 | 138.9 | 128.0 | 124.5 | 124.1 | 116.5 |
| 조 이 혼 율 | 0.6 | 1.0 | 1.1 | 1.5 | 1.7 | 2.0 | 2.5 | 2.5 | 2.5 | 2.8 | 3.0 | 3.4 | 2.9 | 2.6 | 2.5 | 2.5 | 2.4 |

<출처> 통계청(2009). 2008년 이혼 통계 결과

<표 2>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 이혼 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 외국인과의 총 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 증 감 율 | 3.0 | 15.4 | 64.0 | 26.4 | 47.1 | 41.3 | 29.8 |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 380 | 547 | 1,567 | 2,382 | 3,933 | 5,707 | 7,962 |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 1,364 | 1,465 | 1,733 | 1,789 | 2,203 | 2,964 | 3,293 |

<출처> 통계청(2009). 2008년 이혼 통계 결과

20%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4년 이내에 이혼한 부부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인간의 결혼에서는 4년 이하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결혼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혼한 부부는 198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 중 5.4%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0%를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3.1%에 달하고 있다. 그에 비해 5~9년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1985년 이후에 2001~200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3 참고). 따라서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중 결혼 초기의 이혼은 점차 감소하지만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동거하는 기간도 증가하여, 2008년에 이혼한 부부는 평균 12.8년 동거 후 이혼하여, 10년 전인 1998년보다 동거 기간이 평균 2.1년 증가하였다. 이혼 가족 중 한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3.8년인 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은 훨씬 짧아 이혼한 부부 중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부는 2.7년, 외국인 남편-한국인 부인 부부는 5.6년 동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가족의 상당수는 재혼하여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계부모-자녀 관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8년 결혼한 327,715건 중 초혼인 경우는 남자 82.5%, 여자 80.7%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재혼은 남자 17.5%, 여자 19.2%로 증가하였다. 재혼의

<표 3> 이혼한 부부의 동거기간별 구성비 (단위 : %)

| | 1980 | 1985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0~4년 | 42.4 | 41.5 | 37.3 | 32.6 | 32.1 | 31.0 | 29.4 | 29.2 | 29.3 | 28.2 | 26.9 | 24.6 | 25.2 | 25.9 | 26.5 | 27.1 | 28.4 |
| 5~9년 | 28.2 | 30.6 | 29.0 | 25.1 | 24.6 | 24.3 | 23.3 | 22.8 | 22.3 | 23.0 | 23.3 | 23.1 | 22.9 | 22.3 | 21.9 | 20.5 | 18.6 |
| 10~14년 | 16.8 | 15.7 | 19.4 | 20.6 | 19.6 | 19.5 | 19.2 | 18.9 | 18.7 | 19.0 | 19.4 | 19.6 | 18.9 | 18.4 | 18.0 | 17.5 | 15.7 |
| 15~19년 | 7.2 | 7.4 | 8.6 | 13.1 | 13.8 | 14.6 | 15.5 | 15.6 | 15.4 | 14.8 | 14.7 | 14.9 | 14.7 | 14.8 | 14.5 | 14.7 | 14.1 |
| 20년 이상 | 5.4 | 4.7 | 5.7 | 8.2 | 8.9 | 9.8 | 12.4 | 13.5 | 14.2 | 14.8 | 15.7 | 17.8 | 18.3 | 18.6 | 19.1 | 20.1 | 23.1 |

*미상 포함

<출처> 통계청(2009). 2008년 이혼 통계 결과

<표 4> 부모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수

(단위 : 천 명)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20세 미만 자녀수 | 135.8 | 136.3 | 154.0 | 166.3 | 189.3 | 150.3 | 134.0 | 124.0 | 119.3 | 102.7 |

<출처> 통계청(2009). 2008년 이혼 통계 결과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재혼한 경우로 남자 재혼의 92.5%, 여자 재혼의 91.7%에 달한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수가 증가하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의 수도 증가하였다. 2008년 이혼한 부부 중 54.0%인 63,000 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2008년 한 해에만 102,700명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최근 10년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는 1,412,000명에 달하였다(표 4 참고). 즉 이혼이 이혼 당사자인 부부 뿐 아니라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연구쟁점

국내에서 행해진 이혼 가족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주로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서, 이혼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혼법, 제도상의 문제 등을 다룬 연구(이태영, 1968)를 필두로, 이혼의 원인 분석과 이혼에 이르게 된 주관적 사유, 그리고 이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곽배희, 1994; 최재석, 1981). 2000년대 이후에는 이혼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증가하면서, 가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법적인 측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김만웅, 2004; 김미숙 외, 2000; 김미숙 · 원영희 · 이현송 · 장혜경, 2005; 변화순, 1996; 장혜경 · 민가

영, 2002a), 이혼 부모가 이혼 후 겪게 되는 역할 수행, 심리정서, 경제적, 대인관계,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공선영, 2000; 성정현, 1998; 한경혜, 1993).

이혼 가족 이동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일반 가족과 이혼 가족을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영미, 1999; 박병금, 1997; 양연순, 1994; 주소희, 1991). 구체적으로 이혼 가족의 아동이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자아지각과 자존감이 더 낮고,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으며,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 혹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이혼 연구는 이혼이라는 사건을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적응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아동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김승경, 2004; 서지영, 2002; 오은순, 1997; 한준아 · 박경자, 2008).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 가족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는 실태 조사 및 계모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임춘희, 1996; 정현숙 · 유계숙 · 임춘희 · 전춘애 · 천혜정, 1998). 최근 아동의 입장에서 재혼 가족의 적응을 탐색하

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윤주애, 2002; 현은민, 2003).

이혼 가족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 경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이혼 가족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제까지 이혼 연구는 주로 횡단적 연구 설계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혼의 전후 과정 및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혼의 긍정적인 측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부 갈등을 이혼을 통해 해소하여, 아동이 심각한 부부 갈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해 주며, 이혼 전 가족 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 쪽 부모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며 부적응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행해진 이혼 가족 아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과 비교하여, 이혼 가족 아동이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며, 적응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권영미, 1999; 박병금, 1997; 양연순, 1994; 주소희, 1991). 그러나 이혼 가족 아동이 부모의 이혼 전부터 부모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이혼 전부터 많은 문제 및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후에 아동의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 자체 보다는 부모의 이혼으로 야기된 생활환경의 변화, 즉 거주지의 변화, 양육 부모의 양육 방식의 변화와 비양육 부모의 상실, 조부모 등 확대 가족과의 관계 변화,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이혼 가족 아동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 있다.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연

구 결과는 이제까지 이혼 가족 아동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횡단적 설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이혼 후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적응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적응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데, 횡단적 연구 설계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 아동의 삶을 알 수 없으며, ‘이혼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혼 전·후 과정에서의 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적응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부모 이혼 후 25년 이상 아동을 추적한 California 이혼 연구(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 Hetherington과 Kelly(2002)의 연구 등이 이혼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과 양육 부모의 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혼 가족 아동의 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성차 연구가 국외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다(Amato & Keith, 1991; Block, Block, & Gjerde, 1986; Emery, 1999; Guidubaldi & Perry, 1983; Haapasalo & Tremblay, 1994; Kelly, 2000; Morrison & Cherlin, 1995). 국내에서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성차를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김승경, 2004; 민미희·이순형·이옥경, 2005; 오은순, 1997; 정현숙, 1993; 한준아·박경자, 2008). 서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 후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에 더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서구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을 주로 어머니가 갖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아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한다기보다는 어머니

가 양육하는 남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양육 부모의 성에 따른 아동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양육 부모와 자녀가 동성일 때 자녀가 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고(오은순, 1997; Camara & Resnick, 1987; Peterson & Zill, 1986; Santrock & Warshak, 1979),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었다(김승경, 2004; 한준아·박경자, 2008). 즉 이혼 후 동성 부모가 양육을 할 때 더 잘 적응한다는 가설이 우리나라의 가족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아직 축적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성과 아동의 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자 가족이나 조손 가족 등 이혼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혼 가족 아동 연구는 모-자 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김영희·김갑숙·최외선·1995; 장혜경·민가영, 2002a; 정현숙·서동인, 1997), 다양한 이혼 가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율이 현저히 높고,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양육에 관여를 많이 하며, 친척과의 상호작용도 더 많아 외국의 부-자 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다(김승권·김태진·김유경·송수경, 2001; Shapiro & Lambert, 1999). 또한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한 성인 자녀가 양육이 어렵거나 불가할 경우, 조부모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러한 조손 가족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염동훈·김혜민·안치민, 2008).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손 가정은 이혼 모-자 가족, 부-자 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족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혼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 가족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아동은 부모의 갈등, 가정 내의 불화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반응은 연령에 따라 달라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양육 부모로 부터도 버려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혼을 제기한 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품기도 한다. 이혼 가족 아동이 연령 및 발달적 단계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부모의 이혼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 학령전기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유기에 대한 공포를 연구한 정연옥과 동료들(2006, 2007)의 연구에서는 이혼 가족 아동의 유기 공포는 불안 증상을 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상실지각과 유기 공포가 우울 증상을 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이라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해석이 심리적 장애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반응 등 이혼의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누적된다면, 이혼하는 부모가 이혼의 원인,

앞으로 일어날 생활의 변화 등에 대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이혼 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은 대부분의 가족에서 경제적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순혜, 2004).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가족, 특히 이혼 아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연구를 위한 대상 선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행해진 이혼 아동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표집은 주로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에 기초하여 부모의 이혼 유무에 따라서 분류된 대상이거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편의 표집 또는 눈덩이 표집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표집된 연구 대상은 그 수도 제한되어 있고, 대표성도 결여된다. 이혼은 특정한 계층이나 개인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령의 대상들이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사회적·국가적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현실에서, 앞으로의 이혼 가족 연구는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전환하여 건강한 가족 및 강점 중심 접근으로의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Kim, 2003). 즉 이혼 가족의 아동에 대해 스트레스와 위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역경에 직면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성장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 가족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의 직·간접적 효과를 탐색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 가족 아동 및 가족의 발달적 적응을 측정하는 연구와 함께 심층 면접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연구도 필요하다.

일곱째,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혼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에 관한 연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혼 연구에 토대가 되는 통합적 이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로 서구의 사회적 맥락에서 행해진 이혼 연구 결과에 기초한 이혼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혼의 전, 후 과정을 우리나라의 가족 체계와 사회적 특성에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념의 정의 및 조작화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혼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 및 계모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임춘희, 1996; 정현숙 외, 1998). 계부와 계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 연구 역시 계부에 대한 표본의 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고 있으며, 계부모와 계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재혼 가족원들의 적응 및 삶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윤주애, 2002; 장혜경·민가영, 2002b; 전숙영, 1996; 현은민, 2003). 아동의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동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이므로, 이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입장에서 부모의 재혼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모와 가족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및 조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및 접촉에도 많은 변화를 준다. 재혼 가족은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새로운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혼 가족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잘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재혼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도 있는 재혼 가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실제적, 정책적 이슈

최근 이혼과정에 자녀의 복리 증진을 중시하여 이혼과 관련된 제도 또는 이혼과정에 대한 법률 등이 개정되고 있다. 이혼 가족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민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가사조정법 개정안이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개정 민법의 주요 개선 내용에는 ‘이혼숙려기간의 도입(민법 제836조의 2제2항 및 제3항 신설)’,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민법 제836조의 2제4항 신설)’, ‘자녀의 면접 교섭권의 인정(민법 제837조의 2제1항)’,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재산사해행위 취소권(민법 제839조의 3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과 가사조정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협의이혼 할 경우 자녀 양육사항을 의무적으로 합의하여야 하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등 종전의 협의이혼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이명철, 2008). 부모의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 우선의 관점으로 개정된 민법을 조망해 보고, 실행 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정책적인 이슈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나 법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은 상당히 근본적이며 실질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혼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신설된 제도나 법률 개정 등은 이혼을 협의하는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협의 이혼과정에 이혼숙려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 사항을 결정하지 않고는 이혼할 수 없으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혼법에서 부부가 이혼 시 숙려기간 또는 별거기간이 경과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정하였고(성정현·양심영, 2006), 이런 사례는 국내에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는데 참조되었다. 이혼숙려제는 이혼율의 감소에 효과가 있어 2005년에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이혼 취하율이 2005년 15.8%에서 2007년에는 21.1%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피하고자 협의이혼 대신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이미 이혼에 협의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도 협의하였음에도 이혼숙려과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이혼숙려제 시행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이혼 제도에는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복지와 적절한 양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지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협의이혼 하는 부모에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즉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협의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 가사 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에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육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지급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이는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환경 증진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액수 산정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액은 양육부담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30~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여성신문, 2008년 3월 7일자), 이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필요한 액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이 차등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시간에 흐름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현재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개정 법률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특히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 소액의 양육비에 의존하다보면 경제적 빈곤에 직면하게 된다(김은정·백혜정, 2007; 허미화, 2004). 김혜영·변화순과 윤홍식(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 빈곤 지위는 미성년 자녀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이혼 전, 이혼 당시, 이혼 후를 거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은 여성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남편으로부터 소득이전이 만원 증가할 때 마다 여성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3.5%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열악한 양육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된 양육비 산정과 지급이 필요하다.

이혼과정에서 아동에게도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제시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하여 부모에게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던 것에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여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다. 자녀 또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이익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자녀를 방문하는 시기나 방법도 부모의 편의보다는 자녀의 편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지나친 관여를 하여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이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의 양육권이나 친권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게 인정된 비양육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joint custody)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책이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에서는 비양육부모나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때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간에 갈등관계가 증폭될 여지가 많다. 이럴 경우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들은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자녀와 비양육부모와는 여전히 부-자 관계 또는 모-자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자녀나 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정서적,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 하고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이혼과정에 아동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협의과정이나 조정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양육권 판결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 자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판정, 판결하게 된다. 현재는 양육권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해 아동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의견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전명희, 2005).

이혼 협의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인 부모에게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이익을 위해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사가 부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아동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사의 합리적인 판결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과 현재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혼과정에서 이혼 당사자인 부부 이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대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 특히 미성년자 자녀이다. 이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혼중재 서비스를 위해서 이혼과정에서 아동전문가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촉구된다.

이혼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공동의 지원도 요구된다. 이혼 과정에서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파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개인이 지닌 결함이나 실책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이혼 가족이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드러내기를 거부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혼을 경험한 가족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내에 다양한 성을 가진 사례를 당당하게 드러내게 될 때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이를 감추려는 사례보다 많아질 때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혼에 따른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자 가족을 위한 양육비 또는 수당 지원, 세제혜택, 취업기술이 없는 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토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사회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와 부모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최근 들어 이혼자 및 한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한 부부를 위한 동호회나 자조모임, 이혼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금명자 · 송미경 · 김수리 · 이수림 · 송은아, 2005).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새로운 적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적응 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은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에 직면했을 때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응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오은순(2001), 주소희(2002)는 이혼 가족 아동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행동 발달과 불안 수준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자존감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를 위해 이혼 아동들의 자조 모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혼 가족 자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건설적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움을 주어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금명자 외, 2005),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가족의 특성을 감안한 부모 교육, 이혼 가족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정문자 · 김은영, 2005).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 즉, 사회복지기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소 등과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이러한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혼 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혼 상담 및 이혼 조정과정을 중재할 전문가의 양성과 자격 관리도 필요하다. 이혼과 관련한 법률지식, 이혼 조정과정의 이해, 가족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혼 중재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현재 이혼과정에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명시한 법률 규정은 아직 없으며, 단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들을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수, 변호사, 교육자, 지역사회 활동가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1개주에서 이혼중재서비스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을 법 규정에 명시하여 전문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전명희, 2005). 이는 이혼과정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이혼을 경험하는 가족과 자녀의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이혼의 경우 조정 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관련 학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혼 조정자의 자질 및 자격과 함께 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자격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사건이나 이혼,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사회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의 이혼이 가정의 파탄이나 해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변화된 가족관계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 이후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즉 재혼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 가장 가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선영(2000). 모자 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광배희(1994). 이혼 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금명자 · 송미경 · 김수리 · 이수림 · 송은아(2005).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만웅(2004).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숙 · 박민정 · 이상현 · 홍석표 · 조병은 · 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 원영희 · 이현송 · 장혜경(2005). 한국의 이혼 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경(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 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승권 · 김태진 · 김유경 · 송수경(2001). 최근 가족 해체의 실태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희 · 김갑숙 · 최외선(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13-127.
 김은정 · 백혜정(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독',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김혜영 · 변화순 · 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민미희 · 이순형 ·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박병금(1997).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개입의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법원행정처(2008). 사법연감. 서울 : 법원행정처.
 변화순(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 심리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53-78.
 성정현 · 양심영(2006). 이혼숙려제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8(2), 139-163.
 양연순(199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신문(2008. 3. 7). 양육비 기껏해야 70만원대.
- 염동훈·김혜민·안치민(2008). 조손 가족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오은순(1997).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순(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 윤주애(2002).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철(2008). 2008년 개정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가족법연구*, 22(3), 205-264.
- 이태영(1968). 한국의 이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춘희(1996). 재혼가족 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경·민가영(2002a).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민가영(2002b).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전명희(2005). 자녀 양육 협의를 위한 이혼 중재 서비스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3(1), 17-30.
- 전숙영(1996).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김은영(2005). 이혼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3(3), 161-183.
- 정연옥·이민규(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4), 689-708.
- 정연옥·이민규·김은정(2007). 이혼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2(1), 171-188.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현숙·서동인(1997). 편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1998).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49.
- 주소희(1991). 이혼가정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 최재석(1981). 한국가족의 해체에 관한 연구. 서울 : 정신문화연구원.
- 통계청(2009). 2008년 이혼 통계 결과. 대전 :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 부부의 적응과 관련 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한준아·박경자(2008). 저소득층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 탐색 : 아동의 대처 전략, 부모 양육 유형,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6(8), 1-15.
- 허미화(2004).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들에 관한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9(4), 339-356.
- 현은민(2003). 재혼가정의 아동 :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대책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101-126.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0.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26-146.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F.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Camara, K. A., & Resnick, G. (1987). Interpers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 Factors moderating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In E. M. Hetherington & J. D. Arasteh(Eds.), *Divorced,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pp.169-196). Hillsdale, NJ : Erlbaum.
- Emery, R. 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 Sage.
- Guidubaldi, J., & Perry, J. D. (1983). *The legacy of parental divorce*, School Psychology Review.
-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 6 to 12 :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 Hetherington, E. M., & Kelly, J. (2002). *For better or for worse : Divorce reconsidered*. NY : Norton.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3.
- Kim, L. (200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Family Relations, 52*, 258-270.
- Morrison, D. R., & Cherlin, A. J. (1995). The divorce process and young children's well-being :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800-812.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antrock, J. W., & Warshak, R. A. (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Shapiro A., & Lambert J. (1999). Longitudinal effects of divorce on the quality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on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97-408.
- Wallerstein, J. S., Lewis, J. M., & Blakeslee,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 The 25 year landmark study*. NY : Hyperion.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0월 3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